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4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3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통보(2023.12.)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(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)을 반영하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함

2. 주요내용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1명 감원(안 제9조)
 - 현행(6명): 위원장(부구청장), 부위원장(재정관리국장),
 위원(복지동행국장, 도시환경국장, 교통건설국장, 디지털재정과장)
 - 변경(5명): 디지털재정과장 삭제

※ [참고]조례 제9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<th colspan="2" style="background-color: #e6f2ff;">정비 전(13명)</th></tr> <tr><td style="width: 30%;">당연직</td><td>6명</td></tr> <tr><td>구의원</td><td>2명</td></tr> <tr><td>민간전문가</td><td>5명</td></tr> </table>	정비 전(13명)		당연직	6명	구의원	2명	민간전문가	5명	→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<th colspan="2" style="background-color: #ffe6ff;">정비 후(14명~15명)</th></tr> <tr><td style="width: 30%;">당연직</td><td>5명</td></tr> <tr><td>구의원</td><td>2명</td></tr> <tr><td>민간전문가</td><td>7~8명</td></tr> </table>	정비 후(14명~15명)		당연직	5명	구의원	2명	민간전문가	7~8명
정비 전(13명)																		
당연직	6명																	
구의원	2명																	
민간전문가	5명																	
정비 후(14명~15명)																		
당연직	5명																	
구의원	2명																	
민간전문가	7~8명																	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2024. 2. 29. ~ 2024. 3. 20.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해당 없음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5) 제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4.3.26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교통건설국장, 디지털재정과장”을 “교통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동행국 장, 도시환경국장, <u>교통건설국</u> <u>장</u>, <u>디지털재정과장</u>이 된다.</p> <p>⑤ ~ ⑨ (생 략)</p>	<p>제9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교통건설국장</u>----- -----.</p> <p>⑤ ~ ⑨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재정관리국 재무과 한현진
연락처	02-3153-8605